

2027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또는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또는 생활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찰시에는 모든 일정을 연장하여 재입찰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또는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 입찰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2026. 9. 9.(수)~9. 30.(수)
구매예정수량	총 640벌(동·하복(또는 생활복) 각 320벌) 【학생수(신입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작사양	붙임 교복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	금 344,530원 - 동복 : 금 245,370원(4pcs), 하복(또는 생활복) : 금 99,160원(2pcs) ※ 부가세포함 ※ 2027년도 대전시교육청 교복가격상한제에 의한 가격 산출
제안설명회	2026. 10. 6.(화) 16:00 창의관 1층 소회의실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납품기한	동복: 2027. 2. 19.(금) 하복(또는 생활복): 2027. 5. 28.(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	대전여자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교복(동·하복(또는 생활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실제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입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해 구매물량이 확정됨)

※ 입찰참가신청시 교복(동·하복(또는 생활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동복) 규격서」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소기업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4-10호, 2014.4.2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입찰 참가자격 배제

1)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3) 학교주관구매 제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약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2014.7.3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수) 9:00 ~ 2026. 9. 30.(수) 16:00 나라장터(G2B)

나. 제안서 제출기간: 2026. 9. 9.(수) 09:00 ~ 2026. 9. 30.(수) 16:00

다. 제안서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직접접수(※ 우편접수 불가) 평일 8:00~16:00, 토·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1) 입찰 참가신청서(붙임1) 1부
-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신고서(붙임2) 1부
- 3) 교복 납품 제안서(붙임3) 7부
- 4) 교복 제조 사양서(동복), (하복), (생활복)(붙임4) 1부
- 5)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붙임5)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6) 1부
- 7) 품목별 단가표(붙임7) 1부
- 8) 위임장(붙임8) 1부 - 대리인 접수시
- 9) 서약서(붙임9) 1부
-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0) 1부
-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2)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1부 - 제안서 설명회 전일 16:00까지 제출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붙임 16) 1부 - 계약 체결시

마. 제안서 설명회

- 1) 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6:00 창의관 1층 소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2)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2026. 10. 6.(화) 16:00 ~
- 3)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을 전시 및 설명 후 질의응답
- 4)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함

8. 개찰

가. 개찰 일시: 2026. 10. 7.(수) 11:00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개찰 장소: 본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10.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을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제출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가. 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 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지급각서’와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2-630-5906, 계약담당) 및 교무실(☎042-630-5975, 안전생활지도부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붙임
-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 3.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 4. 교복 제조 사양서(동복), (하복), (생활복) 1부
 - 5.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 -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 7.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 8.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시 제출
 - 9. 서약서 1부
 -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1.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2.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1부
1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14. 2026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15. 2026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 규격서(동복), (하복), (생활복) 1부
1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끝.

2026. 9. 3.

대전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대전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45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2027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또는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u>대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u>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_____

사업자 번호 : _____

사업자 대표 : _____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여자고등학교(대전광역시 동구 대동)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 9. 3.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대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교 복 납 품 제 안 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A/S 계획(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2026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 제조 사양서(동복)

견본 품목	재 질(혼용율)
자켓	
블라우스	
스커트	
조끼	
안감	
가디건	
기타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교복제조 사양서(하복)

견본 품목	재 질(혼용율)
블라우스	
스커트	
안감	
악세사리(리본)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교복제조 사양서(생활복)

건본 품목	재 질(혼용율)
티셔츠	
반바지	

2026년 일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불임5>

교복납품실적증명서

[illegible]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실적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일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붙임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하청업체 보유시설()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없다()
- (3) 교복제조 경험 : ()년
- (4) 공동구매 납품실적: ()건
-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대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목		수량	단가 /비율	비고
동복	상의	자켓	1		
		블라우스/셔츠	1		
		가디건	1		
		조끼	1		
	하의	치마/바지	1		
	기타 부속품	예시: 넥타이 등	1		
소계			1	/100%	
하복	상의	블라우스/셔츠	1		
	하의	치마/바지	1		
	기타 부속품	예시: 넥타이 등	1		
생활복	상의	블라우스/셔츠	1		
	하의	치마/바지	1		
소계			1	/100%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대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여자고등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전여자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청 럽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전여자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 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불임12>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배점 점수 해당란에 0 표시 및 하단의 최종 합계 점수 기재 후 평가위원 서명

구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비고
총점 (100) (①+②)	정량평가 (20) ①	◎ 교복 납품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교 동복 및 하복(또는 생활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인정	○ 8건 이상	10	
			○ 7건 ~ 6건	7	
			○ 5건 ~ 4건	5	
	○ 3건 이하		2		
	정성평가 (80) ②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10점)	○ 제출	10	
			○ 미제출	5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및 허리조절 등	○ 매우 우수	20	
			○ 우수	16	
			○ 보통	12	
			○ 미흡	8	
			○ 매우 미흡	4	
			◎ 옷감의 재질(2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	○ 매우 우수	
		○ 우수		20	
		○ 보통		15	
		○ 미흡		10	
		○ 매우 미흡		5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비율이 적정한지 확인	○ 매우 우수	10	
			○ 우수	7	
			○ 보통	5	
			○ 미흡	2	
			○ 매우 미흡	0	
			◎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15점) - 출장 A/S 가능여부 - A/S의 편의성(편리성 및 신속성 등) - A/S의 범위(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매장의 거리근접성	○ 매우 우수	
		○ 우수		12	
○ 보통		9			
○ 미흡	6				
○ 매우 미흡	3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매우 우수	10			
	○ 우수	7			
	○ 보통	5			
	○ 미흡	2			
	○ 매우 미흡	0			
합 계			○○ 점		

2026년 4월 1일

교복선정위원 : (서명)

<붙임1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		상의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셔츠,브라우저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혼용률(%)	표시 기준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폴리 100%	모 60% : 폴리에스텔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	±5이내	±5 이내	±5 이내	±5 이내
세탁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3 이상	4 이상	—	4 이상
	오염	4 이상	3 이상	4 이상	—	4 이상
마찰견뢰도(급)	건	4 이상	3 이상	.	.	.
	습	3 이상	.	.	.	.
일광견뢰도(급)		4 이상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3 이상	4 이상	—	.
	오염	4 이상	3 이상	4 이상	—	.
물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
	오염	3 이상	3 이상	3 이상	3 이상	.
수축률(%)	경사 방향	±3% 이내	±3% 이내	±3% 이내	—	±3%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	±3% 이내	±3% 이내	—	±3% 이내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 이내	±3% 이내	±3% 이내	—	.
	위사 방향	±3% 이내	±3% 이내	±3% 이내	—	.
인장강도(kgf)	경사 방향	18kg 이상	—	18kg이상	—	15.9kg 이상
	위사 방향	18kg 이상	—	18kg이상	—	15.9kg 이상
필링(급)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인열강도(gf)	경사	1000gf 이상	—	.	.	.
	위사	1000gf 이상	—	.	.	.
내드라이성(% 급)	수축율	±3% 이내		.	.	.
	형태 변화	4 이상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붙임14>

2027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여자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을”은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 하복(또는 생활복)은 2027년 5월 28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학생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별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추가구매) ① “을”은 최초 계약 물품 이외에 신입생, 전학생, 재학생이 추가 구매를 원할 경우 1년 이내에 동일한 계약 금액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을”은 교복 추가 구매를 위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 “을”은 “갑”이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갑”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 “을”은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교복 1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굵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 ②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에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⑤ 납품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하고, 제조연월 라벨이 표시되어야 한다.(이월 상품 납품 금지)

제8조(납품 후 수선)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 ②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지역 내)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0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5일(토,공휴일 불포함)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2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 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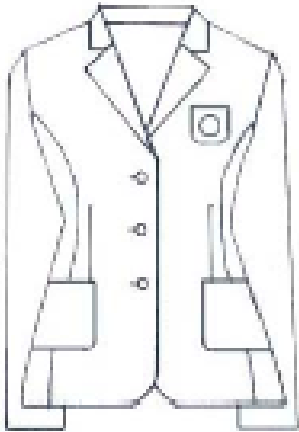
제15조(손실책임)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 사유로 인한 단가 변경 요구는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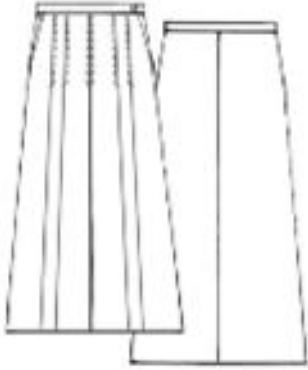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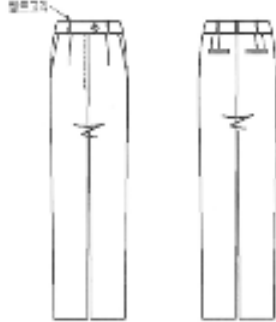
제16조(디자인 소유권) 교복의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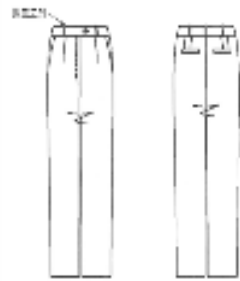
2027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 규격서(동복)

자켓 + 블라우스			
			
특이사항		특이사항	
원단	캐시미어	원단	T/R
혼용률	울80/ 폴리에스테르20	혼용률	레이온35/ 폴리에스테르65
색상	연회색	색상	푸른 줄지
단추	은장단추(학교마크)	단추	백색셔츠단추
비고	◎ 학교 기본 교복 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 학교 마크 새김 ◎ 액세서리 : 팬던트 ◎ 상의 길이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상의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분량 -양쪽 2cm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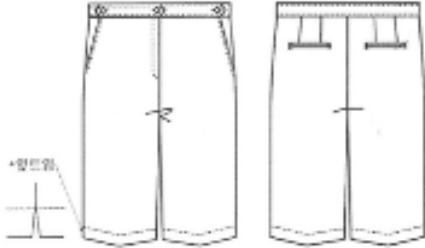
니트조끼 + 스커트(혹은 바지)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원단	니트	원단	T/W 개버딘	원단	T/W 개버딘
혼용률	울50/ 폴리에스테르50	혼용률	울60/ 폴리에스테르40	혼용률	울60/ 폴리에스테르40
색상	곤색에 회색	색상	곤색	색상	곤색
비고	◎ 학교 기본 교복 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 학교 마크 새김 ◎ 액세서리 : 팬던트 ◎ 조끼, 가디건 길이 : 허리 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 스커트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가디건(별도의 선택구매)	
	
특이사항	
원단	가디건
혼용률	울50/ 폴리에스테르50
색상	곤색에 회색
단추	

2027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 규격서(하복)

블라우스 + 치마(혹은 바지)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원단	쿨맥스, T/R	원단	T/W	원단	T/W
혼용률	레이온35/ 폴리에스테르65	혼용률	울60 / 폴리에스테르40	혼용률	울60 / 폴리에스테르40
색상	흰색/하늘색줄지	색상	회색	색상	회색
단추	백색 진주단추				
비고	◎ 학교 기본 교복 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 학교 마크 새김 ◎ 액세서리 부착 : 리본				

2027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교복(생활복) 규격서

상의		하의	
			
생활복 상의 특이사항		생활복 하의 특이사항	
원단	쿨맥스	원단	T/W
혼용률	폴리에스테르 100%	혼용률	울60 / 폴리에스테르 40
색상	남색	색상	검은색
비 고	◎ 학교 마크 새김		

<붙임1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대전여자고등학교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¹⁾

1. 학번, 이름, 성별 등의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